

[후속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다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 재개**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송시각	2023년 9월 6일(수) 13시30분
• 제목	[후속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김혜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0-4538-0051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010-4244-8564 우문숙(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임용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언론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0-2701-9982
• 분량	총 12쪽.

= 진행 순서

- 제목 :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사회 : 이용우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여는 발언 : 남재영 대전 빈들공동체 목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인권단위 대표발언 : 명숙 상임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현장발언 : 최현환 지회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오티칼하이테크지회) / 김선영 지회장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 투쟁계획 발표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회견문 낭독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개최 취지

1.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처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국회와 전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든 등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저 시간끌기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된 채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 개정안을 더욱 축소키는 방향의 중재안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4.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극구 반대하는 정부·여당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의장 등을 규탄하면서 이번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 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다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거제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며 외쳤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빼앗긴 임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무려 1년입니다. 그 사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긴 단식도 하고, 오체투지도 했으며, 한겨울 농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2023년 2월에 와서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기약이 없습니다. 여야 논의를 핑계로 또 다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른 시간은 단지 1년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이 절실히 요구해왔던 노조법 개정이 또 다시 미뤄진 것입니다.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에게 가해진 470억 손해배상 재판을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리하고 파업 강제진압 과정에서 투입된 기증기에 대해 1억7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외국 투자기업인 한국유틸칼하이테크는 온갖 특혜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으면서도 화재를 핑계 삼아 청산을 하고 공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노동자들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합니다. CJ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았던 택배노동자들은 바로 그 원청 본사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폭력으로 기소되고, 20억 원의 손해배상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9월 6일, 우리는 다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국회가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국회의 그 어떠한 변명도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농성, 선전전, 문자행동 등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권한은 가지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 앞에서의 집회와 선전전 등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물으며 투쟁하는 노동자들, 손해배상으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서도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 통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이,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나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최선을 다해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도록 싸울 것입니다. 노동시간도 늘리려고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도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 때,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2023년 9월 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기자회견 발언과 사진

○ 여는 발언 : 남재영 대전 빈들공동체 목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노조법 2·3조가 이제 9부능선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 반대 투쟁을 잘 해서 이번에 노조법 2·3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97년도 국가부도 IMF 사태가 있었고 그때 그것이 큰 불행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그 틈을 비집고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20여 년 동안 온존시켜온 그 세월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이라는 그 족쇄에 묶여서 가혹한 차별을 강요당해 왔고, 일상적으로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을 해 왔습니다.

원인은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조법에 있었습니다. 이후 시대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이 법을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노조법 2조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여년 동안 피나는 법정 투쟁으로 얻어낸 노동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자”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용자성도 법안에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3조의 개정은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손배소를 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손배소를 하려면 쟁위행위로 노동자가 끼친 손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를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희는 노사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성찰하면서 산업현장을 상생과 평화의 자리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큰 눈으로 보면, 노동법 2·3조 개정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묘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법 개정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지난달 임시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9월 본회의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중대하고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20년 법정 투쟁의 결실과, 짧게는 지난해 하반기 약 1년 동안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국회와 전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충분하게 거쳤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든지,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저 시간만 끌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무산시키겠다는 무책임한 작태로, 이런 정부·여당에 대해서 우리 운동본부는 강

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 운동본부 입장에서는 부의된 개정안은 더 이상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더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운운하는 것은 노조법 개정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퇴색시키려는 기만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보여준 태도와 거대 양당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이상의 축소나 중재안 없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권리를 빼앗기고 지옥 같은 노동을 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노동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으로 노조법 2·3조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기자 여러분, 우리 운동본부의 이러한 뜻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권단체 대표발언 : 명숙 상임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저희 바람을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노동안전단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든 선전물을 들고 가산디지털단지과 홍대입구역 등 공단과 시내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점심시간에도 하고,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지인과 저녁 약속을 하러 나온 퇴근시간에도 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노조법은 낯선 것이기도 합니다만 한발 한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기업주의 특권과 국가권력의 방해에 가로막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함께해주세요”라고요. 다른 말로 현재의 노조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각종 핑계로 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때로는 원청 대기업이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발뺌을 못하게 노조법2조의 노동자 정의 규정을 바로잡고, 원청 대기업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개정안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또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요. 회사가 경영 핑계 대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려 할 때 노동자가 싸워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조법의 정의행위 규정에 정리해고 반대 같은 권리분쟁도 포함되면 노조에 가입

되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시민들을 만나서 경총과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거짓말을 알려나갈 겁니다. 경총과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거짓소문을 내며 마치 노조법이 개정되면 경영이 어려워지고 무법천지가 되는 양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러한 거짓선동을 보면 전래동화 ‘호랑이와 꾀감’이 떠오릅니다. 우는 아이들의 울음을 똑 끊어지는 모습을 보고 호랑이는 꾀감이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다는 내용입니다. 노조법 개정은 꾀감 같습니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제시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의 노조법 개정은 영양가와 맛도 있는 꾀감 같은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잡아 먹었던 재벌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꾀감은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꾀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사용자의 특권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최근에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한국 오펜탈하이테크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전세금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한 법이니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화 ‘호랑이와 꾀감’처럼 인권과 평등,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노조법 개정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반갑고 필요한 것입니다. 특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에게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요구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사용자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빨리 의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안전, 인권활동가 1000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에 발표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몸짓 선언의 “진짜 사장이 나와라”로 춤 챌린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챌린지 하는 노래의 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우리의 노동은 가짜 노동이 아냐.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용역하청·바지사장 다 걷어치우고 나와!”

진짜 사장 책임지게 노조법 2조·3조 개정하자!

○ 청년학생 대표발언 : 김건수 활동가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한 청년공동행동)

지난해 SPC 빵 공장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는 더 많은 빵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안전센서를 제거한 채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불어지자 SPC 허영인 회장이 나서 공개사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만든 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얻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학부모 갑질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선생님도 청년 노동자입니다. 일선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갑질의 문제이지만,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도, 교장도, 교감도 일선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결과입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청년공동행동은 대학생 단체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학가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자보를 붙이고, 청년세대가 많은 곳에 청년들에게 함께 이 법을 지지하자고 설득하고자 합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일을 시켜서 돈은 벌지만, 정작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현실. 모든 지시와 결정은 윗선에서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은 현장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존재하지도 않는 공산전체주의와 이념전쟁을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청년들이 일하다 사고로 죽지 않는 사회, 적어도 청년들이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노조법 2조 3조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불법파업법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다수당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에게 노동자에게 벌어진 문제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상식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플랫폼 노동자 절반이 청년세대이고, 청년 세 명 중 한 명은 첫 직장이 비정규직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조법 개정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발언1 : 최현환 지회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오텍칼하이테크지회)

한국오텍칼하이테크지회장 최현환입니다.

손배가압류가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니토 자본은 화재가 발생하자 한 달 만에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들을 버리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13명의 노동자가 지난 10개월 동안 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을 지키는 게 생존권까지 위협할 일입니까?

니토 자본은 고용문제 해결 없이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침탈했습니다.

5명의 조합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4천만 원씩 2억의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또 다른 5명의 조합원에게 부동산에 2억의 청구금액을 걸었습니다.

아직 공장철거계획이 승인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손배가압류를 받아들인 재판부도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자본의 편에서 '먹튀'하는 외투기업을 도와주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니토 자본처럼 먹튀 하는 외투기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에게 손배가압류를 걸어 고용문

제를 해결하도록 강제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니토 자본은 손배가압류로 우리들을 겁박하지만 오판입니다.

니토자본 한국오티칼하이테크는 악의적인 손배가압류를 즉각 취하하고,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투쟁!

○ 현장발언 2 : 김선영 지회장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입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장 옆에는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천막 농성장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은 길바닥에서 무려 8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은 모두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볼 때 현대·기아차 정규직 직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현대자동차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 영업사원 반을 뚝 떼서 비정규직 영업사원으로 그렇게 구조조정 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영업사원은 정규직으로 있을 때나 업무에 구분 없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영업사원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착취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기본급은 물론이고 4대보험조차 가입을 안 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들도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기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현대자동차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노조 탄압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4대보험을 요구한 그 조합원들을 모두 잘라낸 것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도 비정규직 영업사원들은 4대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고 4대보험을 요구하면 그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강제로 폐업시켜 지금도 모두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현대차 정의선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10년째 무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점을 강제로 폐업시키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판매점을 폐업시키고 다시 개소할 수 있는 권한은 현대자동차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판매연대지회만 보더라도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아니 영향력만 행사하더라도 사용자 범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유일한 노동

조건 개선은 노동3권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는 그 선봉에 서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독재 권력에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최선봉에 서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투쟁계획 발표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반갑습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계획이며 간략하게 주요 투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추진 계획은 사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투쟁 계획을 계속 보충하고 좀 더 높은 수위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12월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83.8%가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올해 1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법 2조 개정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CJ대한통운 하청 택배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쌍용차, 현대차의 과도한 손배 청구에 제동을 거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들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여론전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이미 8월부터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연속기고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기고를 통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9월 11일부터는 라디오 광고도 시작됩니다. SNS 매체를 통한 카드뉴스, 영상 쇼츠 등의 선전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운동본부는 규탄 및 국민의힘, 민주당을 대상으로 9월 국회 상정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배치할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을 추진하고,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추진과 동의서 요구 투쟁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합니다.

9월 18일부터는 저녁 촛불문화제가 매일 열릴 예정이며 농성 투쟁을 더욱 집중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을 진행한다면 운동본부 차원의 국회 앞 필리버스터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국민의 힘 규탄 투쟁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노동자 시민의 광범위한 실천 행동과 선전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미 여성계가 1천 명 이상의 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인권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안전, 문화예술, 교수, 법률, 학술계 그리고 청년 단위들의 광범위한 선언이 조직 중이며,

특히 종교계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서 실천 활동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짜 사장 나와라! 챌린지’를 비롯해 9월 18일부터 국회의장을 포함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위한 국회의원 2차 문자 행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전국 도심 지하철역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법 개정 시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화물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의 차량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 일정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제 9월 5일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 1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금속노조 또한 1박 2일로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국회 농성단을 100여 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 후에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사활을 걸고 도심 농성 투쟁을 비롯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배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언제나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함께 성명을 내고 지지와 연대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연대로 지난 8월 30일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9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현재 한-EU FTA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시민사회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이 포럼에 민주노총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쟁점화하기 위해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8일부터 21일에는 국제노총 법률분과 노동기본권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노조법 2·3조에 대한 지금 진행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9월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아내기 위해 운동본부는 최선을 다해서 동지들과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자회견 사진



[출처 : 전국금속노동조합]



[출처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